(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의안제출

제출일자 : 2017. 5. 31.(수)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예비심사 : 2017. 6. 8.(목) ~ 6. 16.(금), 상임위원회

회 부 일: 2017. 6. 16.(금)심 사 일: 2017. 6. 19.(월)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수납액 367,006백만원, 지출액 283,314백만원, 총잉여금 83,691백만원

나. 기금결산보고서(5종)

전년도말 5,974백만원, 수납액 1,775백만원, 지출액 1,275백만원, 잔액 6,474백만원

다. 공유재산 현재액

○ 토지 : 2,804필지 / 398,138백만원

○ 건물: 117동 / 69,162백만원

○ 기타 : 1,568건 / 33,370백만원

라. 물품 현재액 : 553종 9,557백만원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 결산 분석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서 P.15~17)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세계잉여금(A-B)
계	368,910,380	367,006,198	283,314,216	83,691,982
일반회계	354,429,845	352,313,048	276,260,321	76,052,727
특별회계	14,480,535	14,693,150	7,053,895	7,639,255

나. 세계잉여금 (결산서 P.15~17)

(단위:천원)

				이 월 액			
회계별	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83,691,982	27,139,340	2,354,911	25,988,632	1,162,428	27,046,671	
일반회계	76,052,727	24,808,981	2,324,209	22,213,347	1,162,428	25,543,762	
특별회계	7,639,255	2,330,359	30,702	3,775,285	_	1,502,909	

다. 세 입 (결산서 P.18~19)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마수납액(A-B)	결손처분	수납 율 (B/A)
계	368,910,380	383,211,35 6	367,006,1 98	16,205,158	2,345,045	% 95.8
일반회계	354,429,845	364,173,00 9	352,313,0 48	11,859,961	2,238,462	96.7
특별회계	14,480,535	19,038,347	14,693,15	4,345,197	106,583	77.2

^{※ ○} 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 ○ 순세계잉여금 = 세계잉여금-이월액-보조금집행잔액

라. 세 출 (결산서 P.20~21)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	집행잔액(C)	집행 율 (B/A)	불용 율 (C/A)
계	368,910,380	283,314,317	60,632,731	25,163,432	% 76.79	% 6.82
일반회계	354,429,845	276,260,321	55,154,537	23,014,987	77.94	6.49
특별회계	14,480,535	7,053,895	5,278,194	2,148,445	48.71	14.83

마.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결산서 P.295~299 참조)

○ 예산전용 : 10건 597,215천원

○ 예산이체 : 13건 493,967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

바. 재무제표 (결산서 P.335~446)

○재정상태

(단위:천원)

과 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계
자산 총계	908,505,104	56,145,709	8,106,057	972,756,870
부채 총계	7,638,194	736,114	21,603	8,395,911
순자산 총계	900,866,910	55,409,595	8,084,454	964,360,959
부채와 순자산 총계	908,505,104	56,145,709	8,106,057	972,756,870

※ ○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

사. 기금결산보고서 (첨부서류 P.347)

(단위:천원)

기 금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조성액(B)	사용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계	5,974,673	1,775,580	1,275,413	6,474,840
신청사건립기금	2,732,283	40,101	_	2,772,385
사회복지기금	1,951,227	114,170	74,242	1,991,155
식품진흥기금	311,960	55,426	51,950	315,436
재난관리기금	573,172	1,105,594	1,129,221	549,544
옥외광고정비기금	406,031	460,289	20,000	846,320

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첨부서류 P.367)

(단위:천원)

¬ н	ㄱ ᆸ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구 분	현 재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474,678,286	35,961,245	9,968,315	500,671,216	
행정재산	469,313,492	34,782,452	9,466,153	494,629,791	
일반재산	5,364,794	1,178,793	502,162	6,041,425	

자.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첨부서류 P.371)

(단위:천원)

전년도말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 분	현 재 액	
508개	77개	32개	553개	
8,834,107	781,996	58,798	9,557,305	

차. 성인지 결산 (첨부서류 P.399-599)

(단위:천원)

사업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53	22,397,045	21,145,567	94.41%
여성정책추진사업	9	6,532,361	6,246,782	95.6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2	15,603,234	14,637,816	93.81
자치단체특화사업	2	261,450	260,969	99.82

[※] 성인지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 제출

6. 검토의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신청사건립기금 등 5종의 기금결산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검토함.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임. 총 세입결산액은 367,006백만원, 총 세출결산액은 283,314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83,692백만원이며,
 -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39백만원임.

○ <세입분야>

세입예산현액은 368,910백만원, 징수결정액은 383,211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5.8%인 367,0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99.5%로 전년도 102% 미치지 못함.

○ 미수납액은 전년도 16,243백만원보다 감소한 16,205백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4.2%이며,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6%인 2,345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손처분 643백만원보다 27.4%증가한 사항임.

○ <세출분야>

세출예산현액은 368,910백만원, 지출액은 283,31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76.8%로 전년도 집행율 82.5%에 비해 다소 낮음. 이월액은 60,632백만원이고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8%인 25,163백만원으로 나타남.

○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총계는 전년도 933,110백만원보다 39,647백만원이 증가한 972,757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8,396백만원, 순자산 규모는 964,361백만원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부채에 비해 순자산 규모가 크게 나타남.

○ <기금결산>

2016.12.31.기준 총 기금 조성액은 6,474백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5,974백만원보다 8.3%증가한 금액임.

각 기금별로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2,772백만원 사회복지기금 1,991백만원, 식품진흥기금 315백만원 재난관리기금 549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846백만원임.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태풍 차바로 인한 시복구지원금과 복구비 지출에 따라 당해연도 조성 및 사용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음.

- 그밖에 예산전용·이체사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주요 토론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단체의 결산심사는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이 당초 편성 한 예산과목구조와 사업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신중한 사업계획과 체계적인 집행계획으로 공사지연 등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이월 액 및 불용액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7. 참고자료

가. 결산검사의견서

나. 각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서

관 련 법

지방자치법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6882호, 2016.1.12., 일부 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제정] 행정 자치부(회계제도과)

-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 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 변동표
- 4. 성과보고서
-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①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을 요약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또는 기금운 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한다.
 -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결산 개요 및 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계속비 결산 명세서
- 2. 수입대체경비 사용 명세서
- 3. 이월 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 명세서
- 4. 성인지 결산서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
- 1.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서
- 2. 유형자산 명세서
- 3. 감가상각 명세서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외계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11.29., 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13호, 2016.3.2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 자치부렁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